

수원지방법원 2018. 7. 12 선고 2018가단12793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주식회사 락앤락

판결 선고 2018. 7. 12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2003. 9. 17. 접수 제1215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저호)

판사 김태형

별지